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부시장·부지사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전라남도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부시장 2명(정무직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업무 담당 실장 및 국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9.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 두는 부시장 및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 제목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총계	19
정무직 계	4
부시장(차관급)	4
일반직 계	15
고위공무원단	15

[별표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 등 기관	합 계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	경기도	강원 특별 자치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북 특별 자치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총 계	24	3	3	3	3	3	3	3	3
일반직 계	24	3	3	3	3	3	3	3	3
고위공무원단	8	1	1	1	1	1	1	1	1
농업연구관	8	1	1	1	1	1	1	1	1
농촌지도관	8	1	1	1	1	1	1	1	1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 직급 등	합계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 계	16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반직 계	16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위공무원단	16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시·광역시· <u>의 부시장</u>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 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 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별 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 두 는 부시장 및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 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 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 표 3과 같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 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특별 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9